

제3장 무역구제

제3.1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

1.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.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, 당사국들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.
2.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,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,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즉시 제공한다.

제3.2조 반덤핑 및 상계 조치

1.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WTO 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. 이 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,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하여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를 부여하거나 어떠한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.
2. WTO 협정 이행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,
 - 가. 당사국들은 반덤핑 마진이 가중평균 가격비교, 개별거래 가격비교 또는 가중평균-개별거래 가격비교를 기초로 산정되는 경우, 모든 개별 마진을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한다는 양국의 현재 관

행을 확인하고, 그러한 관행이 지속될 것이라는 양국의 기대를 공유한다¹. 그리고

- 나. 반덤핑 협정 제9.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당사국은,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.

제3.3조

통보 및 협의

1.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한 후, 그리고 조사 개시 절차 전에, 그 당사국은 가능한 한 빨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통보를 제공한다. 조사 개시 직후, 그 당사국은 그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.
2. 상계 조치의 신청이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접수된 후 가능한 한 빨리, 그리고 조사 개시 전에, 다른 쪽 당사국의 생산품이 그러한 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, 그 상황을 명확히 하고 상호 합의된 해결에 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의 기회가 제공된다.

¹ 이는 WTO 도하개발아젠다 규범 협상에서 각 당사국이 취하는 입장과 무관하다.